

Legal Update

2024년 8월

공고일	제목	법령	유형	관할 관청	주요 제·개정(입법예고) 내용	입법 예고 종료일	시행일	관련 부서
8/19	공정거래분쟁 조정법	법률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p>■ 주요내용</p> <p>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17년 만에 일원화된 법률을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분쟁조정제도 전반을 일괄 정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함. <p>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p>	~8/E 국회 제출 예정	-	Legal,
8/19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p>■ 주요내용</p> <p>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 증가함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그 매출액·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함. ▶ 동의를결제도 도입 <p>소비자 기만행위의 경우 여러 소비자에게 동시다발적 피해를 주나,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받기 곤란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를결제 도입함.</p>	~8/E 국회 제출 예정	-	IT, MKT
8/22	공정거래분쟁 조정법	법률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p>■ 주요내용</p> <p>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u>집단분쟁조정제도</u>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8/E 국회 제출 예정	-	Legal

					<p>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u>이에 6 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함.</u></p>			
8/19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p>■ 개정이유</p> <p>➢ 6 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자문제도 및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p> <p>■ 주요내용</p> <p>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 (안 제 4 조부터 제 13 조까지)</p> <p>②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정비 (안 제 14 조부터 제 26 조까지)</p> <p>③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제도 정비 (안 제 27 조부터 제 37 조까지)</p> <p>④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안 제 38 조부터 제 41 조까지)</p>	~8 월 말 내 국회 제출 예정	공포 후 1 년 뒤 시행	Legal
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p>■ 개정이유</p>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8 월 말 내 국회 제출 예정	공포 후 즉시	IT

					<p>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증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u>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u></p>			
8/20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 지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u>경제적 이해관계 공개*</u>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함. 추천·보증인이 <u>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u> 	8/20~9/9	-	Sales, MKT
8/2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공포	공정위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 개정(2024. 6. 21. 시행)으로 <u>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함.</u>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u>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음</u> 다만, 평가 등급의 <u>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됨.</u>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u>협조 감경</u>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함. <p>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감경(10%)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u>행위사실을 인정</u>'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u>해당 위반행위를 중지</u>'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p>	-	8/28	Legal